JIPYONG NEWSLETTER <u>법무법인 지평|증권금융</u> 뉴스레터



■ 정책 동향 ■

소규모 펀드 정리 관련 모범규준 시행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6년 2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11월에 발표한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저희 법무법인의 2016년 2월호 증권금융 뉴스레터 참조)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1. 주요 내용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2016년 3월 말부터 매 3개월마다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소규모 펀드 비율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 수립 및 금융감독원 제출). 또한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절차(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2주 이상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가 마련되었으며,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또는 모자형 펀드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모자형 펀드 전환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획일적 비율 규제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 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운용사)의 경우 소규모 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하게 설명하는 등 투자 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소규모 펀드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다운로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보도자료

1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